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 안내문



HILLSTATE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계약체결 전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등을 안내 드리오니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서류의 검수 및 전산 검색 등을 통해 적격한 당첨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 혼잡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접수건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문예약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홈페이지(<http://hillstate-cd-central.co.kr>)
 - 방문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및 정당계약 체결 방문 시 견본주택 혼잡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본인 1인에 한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안내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정당계약 기간
8/29(화)	8/31(목) ~ 9/6(수) [10:00 ~ 17:00]	9/12(화) ~ 9/15(금) [10:00 ~ 17:00]
당첨자(동호수) 확인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장소 :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당첨자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소명기간 내 해당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기타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를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서류접수기간(2023.08.31(목)~2023.09.06(수)/7일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 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3.08.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입주대상자의 청약 신청 내역과 당첨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을 본인이 직접 소명하여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77-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유의사항 안내

- 01

계약 체결 전 서류제출 및 전산검색을 통해 적격한 당첨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02

건보주택 혼합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 및 정당계약 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가급적 본인 1인에 한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방문이 가능하나, 방문 예약 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로 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당첨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 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04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방문 전, 아파트 공급대금 1차 계약금(1,0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10%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수분양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 중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세액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금 납부 계좌

구분	계약금	납부계좌
분양대금 계약금 (1차)	10,000,000원	Sh수협은행 1010-2395-388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84A 1,078,000원	Sh수협은행 1010-2395-3933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84B 954,000원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10%)	선택 품목에 따라 상이	Sh수협은행 1010-2395-3933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정확한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분양대금의 경우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않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주택 현금수납 절대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1)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사본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당첨자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격 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본인발급분)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 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단신부임의 경우 입증서류 별도 필요
견본주택 비치 양식	청약자	가점산정기준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분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 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상 1년 이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분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복무확인서	청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그 외 사업주체 요청 서류	해당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주체에서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당첨자격확인 위임용(본인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번호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서류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77-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타자 및 오해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